

항공기용품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공급자등”이란 용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 판매자 및 항공사를 말한다.</p> <p>11.·1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공급자 등”이란 ----- ----- 판매자, 항공사 및 급유업체-----.</p> <p>11.·12. (현행과 같음)</p> <p>13. “송환대상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자를 말한다.</p>	<p>○ 공급자의 범위에 급유업체 포함</p> <p>○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내식 제공대상 확대 반영</p>

<신 설>

제3조(반입등록) ① 공급자들은 외국물품을 용품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외국용품 반입등록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반입등록의 정정·취하) 공급자들이 제3조에 따라 반입 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입등록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급유전표(ADR:Aviation Delivery Receipt)”란 급유업체가 적재한 실제량을 기재하고 당해 국제무역기의 기장 및 그 대리인이 이를 확인한 영수증을 말한다.

제3조(반입등록) ① 공급자 등-----

-----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용품 반입등록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반입등록의 정정·취하) 공급자 등-----

-----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등록 정정/취하승인(신청)서-----
-----.

○ 항공기 연료유 실제 적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 정의 규정 개정 반영 및 조문 정비

○ 정의 규정 개정 반영 및 조문 정비

<신 설>

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적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적재허가로 같음한다.

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세관에 사전 적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국내운송 구간에 대한 용품 관리 규정 신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용품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항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실질적인 적재 작업은 국내운항기의 출발공항에서 이뤄지므로 국제무역기 출항공항 관할 세관장에게 영업등록 생략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제6조(용품의 하기 신청 등) ① 국제무역기에서 용품을 하기하려는 공급자 등

제6조(용품의 하기 신청 등) ① -----

은 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외국용품 하기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내국용품 하기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기한 이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144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탑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용품은 하역신청을 생략할

-----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용품 하기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의 내국용품 하기허가(신청)서 -- 제출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도 세관장은 법 제144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탑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용품은 하역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수 있다.

1. 항공기 부품 및 정비도구(Fly Away Kit)
2. 보안용 무기류(전기충격기 등)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1. 항공기 부품 및 정비도구(Fly Away Kit)
2. 보안용 무기류(전기충격기 등)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급자 등은 외국에서 입항한 후 국내 운항기로 자격전환하여 국내구간을 운항할 예정인 국제무역기에 대해서 하기 장소를 용품의 재고관리를 하는 국제항의 보세구역으로 하여 제1항의 하기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하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하기허가로 같음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기허가를 받은 용품을

○ 국제무역기를 자격전환하고 동일한 항공편으로 국내운항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지 국제항 관할세관에 사전 하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국내운송 구간에 대한

<신 설>

제7조(용품의 환적 신청 등) 국제무역기에서 용품을 환적하고자 하는 공급자 등은 환적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외국용품 환적허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내국용품 환적허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하기장소 보세구역 도착 이후에 봉인 해제하여 하기할 수 있다.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하기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입항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용품의 환적 신청 등) 국제무역기에서 용품을 환적하고자 하는 공급자 등은 환적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용품 환적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내국용품 환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품 관리 규정 신설

- 실질적인 하기 작업은 국내운항기의 도착공항에서 이뤄지므로 국제무역기 입항공항 관할 세관장에게 영업등록 생략
- 조문 정비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공급자는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 까지 전자문서로 항공편별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① -----
--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

② -----
----- 경우
에는 당해 항공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
----- 별지 제9호서식의 국제무역기 연
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 제출하
고 허가를 받아야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고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재 확인받고 서명을 받

○ 법령명 정비

○ 항공유 적재예정허가 절차, 적재확인 서류,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등 명확화

○ 항공유 적재예정허가 절차, 적재확인 서류,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

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료유가 적재되었음을 기장 또는 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자가 전자문서로 적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재확인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 설>

은 급유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국제무역기에 연료유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까지 전자문서로 기장 또는 대리인에게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량과 공급자 정보가 기재된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항공편별로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 상의 적재량을 적재허가를 받은 양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확인등록을 함으로써 적재확인서를

서 교부 절차 등 명확화

○ 항공유 적재예정허가 절차, 적재확인 서류,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등 명확화

○ 항공유 적재예정허가 절차, 적재확인 서류,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

제10조(용품의 하역 허가) ① 세관장은 항공편, 용품의 종류와 수량, 승객 및 승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하역 허가 해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허가사항의 정정·취하)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적재확인서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유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용품의 하역 허가) ① -----

----- 허가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사항의 정정·취하) -----

----- 별지 제10호 서식의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

서 교부 절차 등 명확화

○ 띄어쓰기 수정

○ 항공기용품 적재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상악화, 긴급정비 등의 사유로 출항일자가 다음 날로 변경된 경우 정정 신청 절차 생략으로 민원불편 해소

1. ~ 6. (생략)

제16조(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① 용품의 양도 및 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용품을 양도한 자는 보세운송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용품의 양도양수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용품의 폐기) ① 공급자 등이 법

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① -----

-----.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반입등록이 되지 않고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2호서식의 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17조(용품의 폐기) ① -----

- 항공기용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양도·양수절차 완화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용품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용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용품 폐기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때에는 폐기 완료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항공폐기물을 하기 및 폐기한 자는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를 일자별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매 달 7일까지 전월 항공폐기물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생략)

제18조(용품의 보수작업) ① 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용품을 보

-----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용품 폐기승인(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 완료보고서-----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보고서를-----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용품의 보수작업) ① -----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수작업하려는 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신청인은 제1항의 보수작업을 완료한 즉시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의 제공) ① 항공사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이하 “출국대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항공기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 대기하는 경우에 식음료 제공 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식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수작업 승인(신청)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제19조(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의 제공) ① 항공사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
----- 하며, 송환대상외국인을 포함한다----- 지연되거나 송환지시서가 발급되어 -----
-----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식음료 제공 허가(신청)서-----
----- . 이 경우 항공사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공급자를 대

○ 조문 정비

○ 출입국관리법 개정
에 따라 송환대상 외국인
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
차 마련

행업자로 지정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급자 등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
서의 장-----

-----[법 제133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의 출국장내(환승장을
포함한다) 지정보세구역과 「출입국관리
법」 제2조제16호의 출국대기실로 한정
한다. 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
-----.

③ -----

○ 출입국관리법 개정
에 따라 송환대상 외국인
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
차 마련

1. ~ 5. (생략)

② 항공사 등은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
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보세구역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식음
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보세구역(법
제133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의 출국
장내(환승장을 포함한다) 지정보세구
역에 한정한다. 이하 “식음료제공구역”
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식음료제공구역의 지정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음료제공구역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의 안전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해야 한다.

1. (생략)

2. 출항편수, 탑승객수, 환승객수, 1시간이상 지연출항편수, 1시간이상 대기 승객수 등 최근 1년의 대기승객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④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대기승객 또는 송환대
기자-----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

③ 보세운송 중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외국용품 보세운송 멸실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보세운송이행) ① (생략)

②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세운송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출발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도착보고) ① 보세운송신고인은 물품이 도착한 때 보세구역 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

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

③ -----
-----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용품 보세운송 멸실신고서-----.

제21조(보세운송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

-----.

제22조(도착보고) ① -----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지세관장에게 외국용품 보세운송도착 보고(별지 제22호 서식)를 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3조(항공사에 대한 특례) ① 항공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반입등록하거나 자기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무역기에 한정하여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하역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허가(신청)서 또는 하기허가(신청)서에 대행업자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외국용품 보세운송 도착보고-----.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 공급자 등에 항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특례 규정 불필요

제24조(판매자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판매자는 출입국 국제무역기 편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1. · 2.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 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③ (생략)

④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1. (생략)

<신설>

제24조(판매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관세법 시행규칙」-----

③ (현행과 같음)

④ ----- 팜플릿 -----

-----.

1. (현행과 같음)

2. 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절차, 관세 등의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

○ 문장부호 수정

○ 외래어표기법 오류 수정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 반영

2. (생략)

제27조(교환, 환불의 처리) ① (생략)

<신설>

② 판매자는 교환·환불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교환·환불된 물품은 보세창고 재반입 절차에 따라 반입 등록하고, 교환한 물품은 제15조의 용도외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8조(판매내역 제출 등)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월별 항공기내판매실적(별지 제23호 서식)은 다음달 10일 까지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7조(교환·환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자진신고한 후 해당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교환·환불할 수 있다.

③ -----
관리해야 -----

-----.

제28조(판매내역 제출 등) -----

-----.

1. -----별지 제23호서
식----- 10일까지

○ 문장부호 수정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 반영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2. 규칙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 구매자(별표 제24호 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항 다음날 까지

3. 전자상거래, 전화 등에 따른 사전예약내역(별지 제25호 서식)은 국제무역기 국내 입출항 전일까지

제29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공급자 등(대행 및 하역업체를 포함한다)은 용품의 반입등록, 하역 및 보세운송 등과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 및 환적 허가일, 신고일 또는 이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용품의 관리 적정여부 및 부정유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급자등이 보관하

2. -----

별표 제24호서식-----
--- 다음날까지

3. -----
----별지 제25호서식-----

제29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공급자 등

② -----

----- 공급자 등-----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 정의 규정 개정 반영

고 있는 선하증권(Airway Bill을 포함한다), 송품장,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① (생략)

제31조(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 또는 재고조사를 하는 때에는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용품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용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 공급자 등 -----

-----.

○ 정의 규정 개정 반영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또는 재고 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생략)

제3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

④ -----

----- 따른다. -----

-----.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규정) -----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 인용고시명 띄어쓰기 수정

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4조(재검토기한) -----

----- 2023년 1월 1
일 ----- 매 3년 -----
----- 12월 31일-----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재검토기한 재설정

○ 띄어쓰기 수정

<p><신 설></p>	<p>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2-00호, '22.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항과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 부칙 신설</p>
--------------------	---	----------------

